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

대 검 찰 청

수신자 강성준 귀하 (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16184794	**접수일** 2026. 03. 03.

청구 내용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참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의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자료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내용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형집행순서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기에 가석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형집행순서 변경제도의 취지를 구현함과 아울러 그 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정시설"이라 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 나. “관할 검찰청”이라 함은 교정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을 말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다.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 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허가여부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결정한다. 나. 관할 검찰청 검사는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이 검찰청에 직접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대한민국 정보공개 KOR 정보공개

장에게 송부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그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직접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 가. 및 다.항의 경우에 관할 검찰청이 아닌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이 된 경우에는 당해 검찰청 검사는 제출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서 기타 서류를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담당직원의 자료확인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그 변경신청서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용자신분카드, 판결문 그 밖에 필요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관련 자료의 송부요청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관할 검찰청 검사가 제3조 다.항에 의하여 직접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불신청 결정서, 수용자신분카드, 판결문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6. 형집행순서변경 허가여부의 기준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계속 중인 추가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벌금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5) 검사의 형집행순서변경 불허 결정 후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나. 관할 검찰청 검사가 제3조 다.항에 의하여 직접 변경허가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위 가.항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의 신중 관할 검찰청 검사가 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형집행순서 변경 제도의 취지 및 기본권보장 이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8.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6. 1.부터 시행한다.

공개 일시	2026. 03. 12. 18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0원	0원	0원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KOR 정보공개

검찰총장

검찰서기 윤병철 공판2과장 강진욱

협조자

시행 공판2과-3064(2026. 03. 12.)

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전화번호 02-3480-2366 팩스번호 02-3480-2677 / imybc@spo.go.kr / 공개 구분

인쇄일자 : 2026. 03. 13. 13:31:54

인쇄자 : 강성준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